

## 간편한 작업복을 입자

### ◆ CHECK POINT ◆

- 작업복은 작업에 불편이 없는 간편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하자.
- 작업복 착용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사항

### 1. 의복의 용도

의복이란 기온의 변화에 대하여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는 점차 외양(스타일)을 좌우하는 사치와 연관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작업복은 외양보다는 작업에 편리하고 재해로부터 자기 몸을 지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넥타이를 맨채 작업하다 넥타이가 선반에 말려들어가 부상을 당하거나, 모자 없이 작업하다 머리카락이 회전축에 말려들어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 『멋 위주의 복장』에는 항상 위험성이 따르므로, 목이나 허리에 수건을 차고 또는 단추를 풀고 다니는 등 단정치 못한 복장은 재해의 원인이 된다. 작업시에는 발끝에서 머리까지 간편한 복장을 하면 작업에도 편리하고 부상을 당할 염려

도 없게 된다.

### 2. 바른작업복장의 기준

#### 가. 작업복

- ① 작업복은 몸에 꼭 맞게 입는다. 옷깃이 너무 길거나 허리통이 큰 것은 피한다.
- ② 소매나 바지가락이 길면 기계에 말려 들거나 물체에 걸려 위험함으로 옷자락이나 소매는 짧은 것이 좋다.
- ③ 단추를 풀거나 수건을 늘어 뜨리는 것은 기계에 말려들기 쉬워 위험하며, 넥타이도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밥이 풀리거나 떨어진 작업복은 기계에 말려들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고쳐야 한다.
- ⑤ 작업복은 자주 세탁하여 항상 깨끗이 입는다. 기름

이 묻은 경우 불이 불기 쉬워 위험하므로 기름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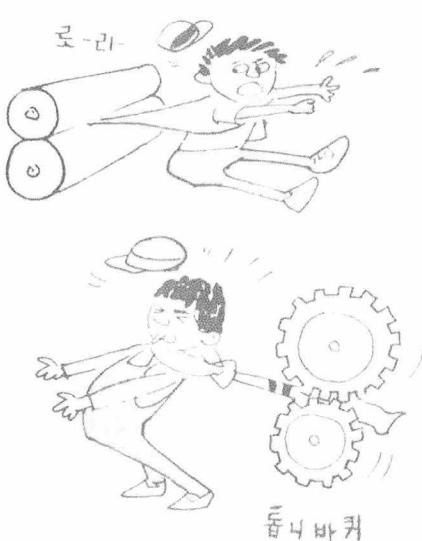
- ⑥ 덥다고 하여 알몸으로 작업하는 것은 금물이다. 알몸으로 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거나 용접작업중에 용접봉이 접촉되어 감전당하는 예가 많다.
- ⑦ 호주머니에 칼, 인화물질을 두지 않는다. 성냥, 라이터 또는 칼, 드라이버 등 뾰족한 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 부상을 당하거나 동료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례가 많다. 특히 휘발류, 화학류 등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성냥, 라이터를 가지고 들어가 큰 사고를 일으키게 한 예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⑧ 작업장에서 붙은 유해물이 작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몸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물론 그 밖의 작업에서도 작업복과 통근복을 별도로 하여 작업복을 입은 채로 집에 가지 않도록 한다.

#### 나. 신발

- ① 잘 벗겨지고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은 피한다. 특히 고소작업, 중량물 운반작업 등에서는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 ②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작업장에서는 철판이 든 안전화를 사용한다.

#### 다. 모자



기계주위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모자를 쓴다. 여자는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하고 모자는 머리카락을 완전히 덮는 것으로 한다.

#### 라. 장갑·앞치마

장갑이나 앞치마 착용이 금지된 작업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보울반등 기타의 기계를 운반할 때에는 장갑을 끼고 있으면 기계의 회전부분에 손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장갑착용 금지작업과 장갑착용 작업이 구별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복장을 점검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모든 근로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더라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복을 입는 것이 자신의 신체를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복장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 작업능률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시행규칙에는 작업복 착용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아니하나 특별한 작업복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경우에는 당해 작

업장의 근로자는 반드시 작업복을 입도록 동 법령이 의무화 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작업에는 반드시 간편한 작업복을 입어야 하며 특정화학물질이나 연업무에 임하는 근로자는 보호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작업 및 화물의 승하차 작업시에는 작업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노천에서의 굴착작업, 채석작업, 하적단 위에서의 작업, 별목작업시에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③ 아세틸렌용접작업, 4알킬연작업, 가연기솔린 작업시에는 보호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나 반대로 드릴기, 모폐기 기계작업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쟁내의 통로에서의 작업 또는 4알킬연 작업시에는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4알킬연 작업시에는 보호앞치마의 착용이 의무화 되고 있다.